



## 주·정차 단속업무를 담당한 공무원 근로자에 대한 다른 부서로의 전보명령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사례

(대법원 2023.9.21. 선고 2022다286755 판결)

피고는 제주특별자치도이며, 원고는 주·정차 단속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 근로자들입니다. 피고는 원고들을 주·정차 단속업무에서 다른 부서로 전보 조치하였고, 원고들은 피고가 한 이 사건 전보명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전보명령으로 인한 원고들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는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전보명령의 무효 확인을 청구하였습니다.

원심은 (1) 도로교통법상 주차방법의 변경 및 이동지시, 범칙금 통고처분 등의 업무를 수반하는 주·정차 단속업무는 피고가 임명하는 공무원만이 수행할 수 있으므로 주·정차 단속업무의 합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무원 근로자인 원고들의 부서 및 담당 업무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전보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였고, (2) 이 사건 전보명령으로 원고들에게 발생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보다 지나치게 크거나 원고들이 근로자로서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3) 피고는 원고들과 이 사건 전보명령 전에 성실하게 협의절차를 거쳤으며, 원고들의 동의를 이 사건 전보명령의 효력요건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전보명령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 관련구성원

#### 기영석

변호사

02-316-4021

ysgi@shinkim.com

#### 이세리

변호사

02-316-4034

#### 박성기

변호사

02-316-4280

skipark@shinkim.com

#### 김종수

변호사

02-316-1678

srlee@shinkim.com

jsokim@shinkim.com

**윤혜영**

변호사

02-316-4491

hyyun@shinkim.com

**송우용**

변호사

02-316-1696

wysong@shinkim.com

**김종현**

변호사

02-316-1721

johkim@shinkim.com